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8.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4. 6. 8.

다. 상 정 일 자 : 2004. 6. 21.(제11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가. 제안이유

- 2004. 7. 1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함에 따라 그동안 동(신청접수 및 조사)과 구(결정)에서 분담 처리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 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하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업무의 신속·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용자금 대부신청
 - 종 전 : 동장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
 - 개 정 : 구청장에게 제출(동장 추천 폐지) (안 제3조 및 제6조)
- 용어정비(안 제4조제1항)
 -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 개정 건은 2004. 7. 1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 절차 등을 주민편의도모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의 조정함으로써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